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3월 19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11.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5.11.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개정안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가 제출하였으며, 현행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라 하더라도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 입법 취지를 찾을 수 있음.

특히 지역 내 자살이 빈발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한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계의 변동을 가져오거나 혹은 집행기관에게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 기간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시행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계의 변동을 가져오거나 혹은 집행기관에게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 기간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함(안 부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공포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그 밖에 자살예방</u>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7. <u>자살예방</u> ----- ----- ----- ----- -----	
<u><신설></u>	8. <u>그 밖에 자살예방</u> <u>및 자살자의 유족</u> <u>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u> <u>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u>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u>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u>공포한 날</u> 부터 시행한다.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그 밖에 자살예방”을 “자살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 6. (생략) 7. <u>그 밖에 자살예방</u> 및 자살자 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u><신설></u>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자살예방</u> ----- ----- ----- ----- 8. <u>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u> <u>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해당</u> <u>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u> <u>다고 인정하는 업무</u> ② ~ ⑤ (생략)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